

의 안 번 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18. 11. .

의 결
사 항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[안]

제안연월일	2018. 11. 12.
제 안 자	장미경 의원 외 1명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18. 11. 12.

제안자 : 장미경 · 송용자 의원

1. 제안이유

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하고자 함.

2. 내 용

가. 구성인원 : 13명(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11명)

나. 존속기간 :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다. 활동내용 :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

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

3. 관련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

나.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)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